

Ilsung Research Award (일성 연구학술상) 운영규정

2011년 5월 1일 제정

2015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10월 1일 개정

제 1조 (목적)

이 연구학술상은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선정된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로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Ilsung Research Award(일성 연구학술상)'이라고 칭한다.

제 3조 (재원)

1. 이 연구학술상의 연구비는 일성신약(주)에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원인 연 1,00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비 금액의 변동이나 지급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은 학회와 일성신약 간에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조 (신청 자격)

1.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정회원으로서 최근 4년 이내에 AARD 또는 AAIR 에 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가 있는 경우에 신청 자격을 갖는다.
2.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과제로 타 연구비를 수혜 받거나, 학위논문으로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신청할 수 없다.
3. 최근 2년 이내에 이 학회나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 학술상(또는 연구비)을 수상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4.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현직 임원은 학술상을 신청할 수 없다.
5. 최근 3년간의 학회 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제 5조 (신청 서류)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아과학교실의 주임교수 또는 분과장이나 종합병원 소아과의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연구 계획서 7부 (소정양식)
-원본1부
-사본 6부 (사본에는 소속기관 및 연구자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인적사항 1부 (소정양식)
4. 주요 연구업적 목록 (저서 및 논문) 1부
5. 추천서 1부 (소정양식)

제 6조 (신청 과제수)

매년 연구과제 1편에 대해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심사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이사장 혹은 차기이사장(위원장)과 연구비 신청자와 무관한 이사 4인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별도 심사규정에 따라 연구비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 8조 (발표 및 지급 방법)

확정된 연구비 수상자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고 과제명과 연구자 명은 'AARD'에 공고한다. 상금의 지급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차로 하고 6개월 후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나머지 1/2을 지급한다.

제 9조 (수혜자 의무)

1. 이 연구과제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단, 중복 사사는 허용한다.)
2.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결과를 차기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 종료후 24개월 이내 AAIR, AARD 혹은 SCI(E) 저널에 논문으로 결과를 출간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 결과 발표시 '0000년 일성신약의 지원금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 게재한 뒤에 별책 15부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이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시작 6개월에 중간보고서와 연구종료 2주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 10조 (기금 관리)

1. 이 연구학술상의 기금관리는 재무이사가 담당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연구학술상의 기금 관리에 대한 감사는 이 학회의 감사가 담당한다.
3. 사정에 의해 연구비 지원의 축소로 생긴 예산은 다시 기금에 포함된다.

제 11조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3. 연구비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연구비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4. 이 규정은 2011년 5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4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10월부터 개정 시행한다.